



# 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namwon.go.kr](http://www.namwon.go.kr)

제73호 2022. 11. 25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## 규 칙

- 남원시 규칙 제720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 1

## 훈 령

- 남원시 훈령 제435호 남원시 정보보안업무규정----- 3

## 고 시

- 남원시 고시 제2022-162호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-----4

## 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54호 공시송달공고-----7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60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-----9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83호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-----26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84호 도로지정공고-----42
- 남원시 공고 제2022-2285호 도로지정공고-----4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「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**남 원 시 장**

직인

2022년 11월 25일

남원시 규칙 제 720 호

**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

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담보내용)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자연재해 사망 (일사병, 열사병 포함)</u></p> <p>2. 3. (생 략)</p> <p>4. <u>강도 상해 사망, 후유장해</u></p> <p>5. ~ 8. (생 략)</p>	<p>제2조(담보내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&lt;삭 제&gt;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&lt;삭 제&gt;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「남원시 정보보안업무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2년 11월 25일

남원시 훈령 제 435 호

남원시 정보보안업무 규정

본 규정의 내용은 보안유지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

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공개)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고시 제2022 - 162호

##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25일

남 원 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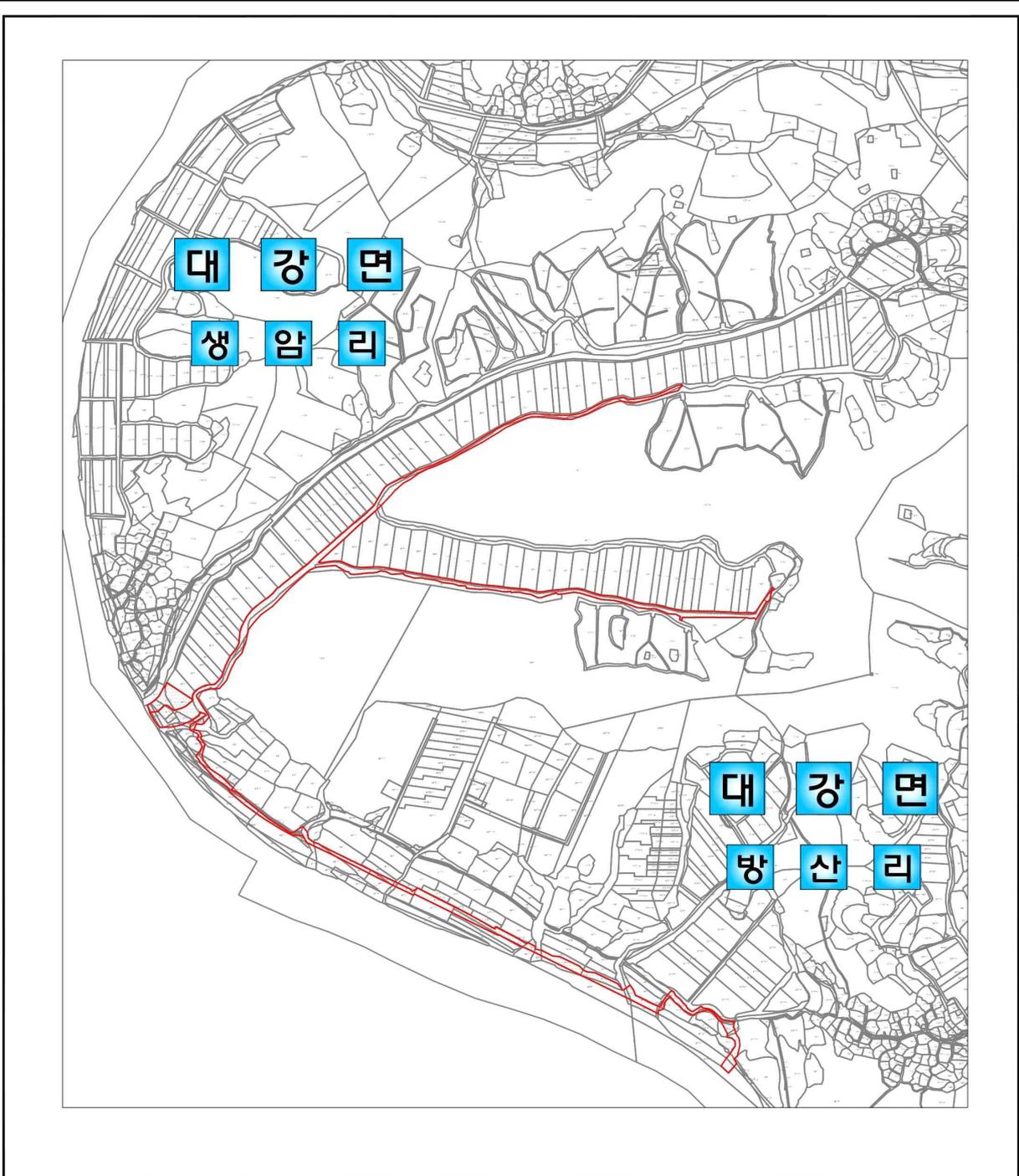
### 1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

지구명	위 치	지정개요			지 정 사 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m <sup>2</sup> )		
생암지구	전북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2번지 일원	침수위험 지구	나	94,896	· 섬진강(국가하천)으로 유입되는 생사2천(소하천)의 양안 저지대로 수위 상승시 내수배제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	

### 2. 기 간 :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시까지

### 3.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

#### ■ 생암지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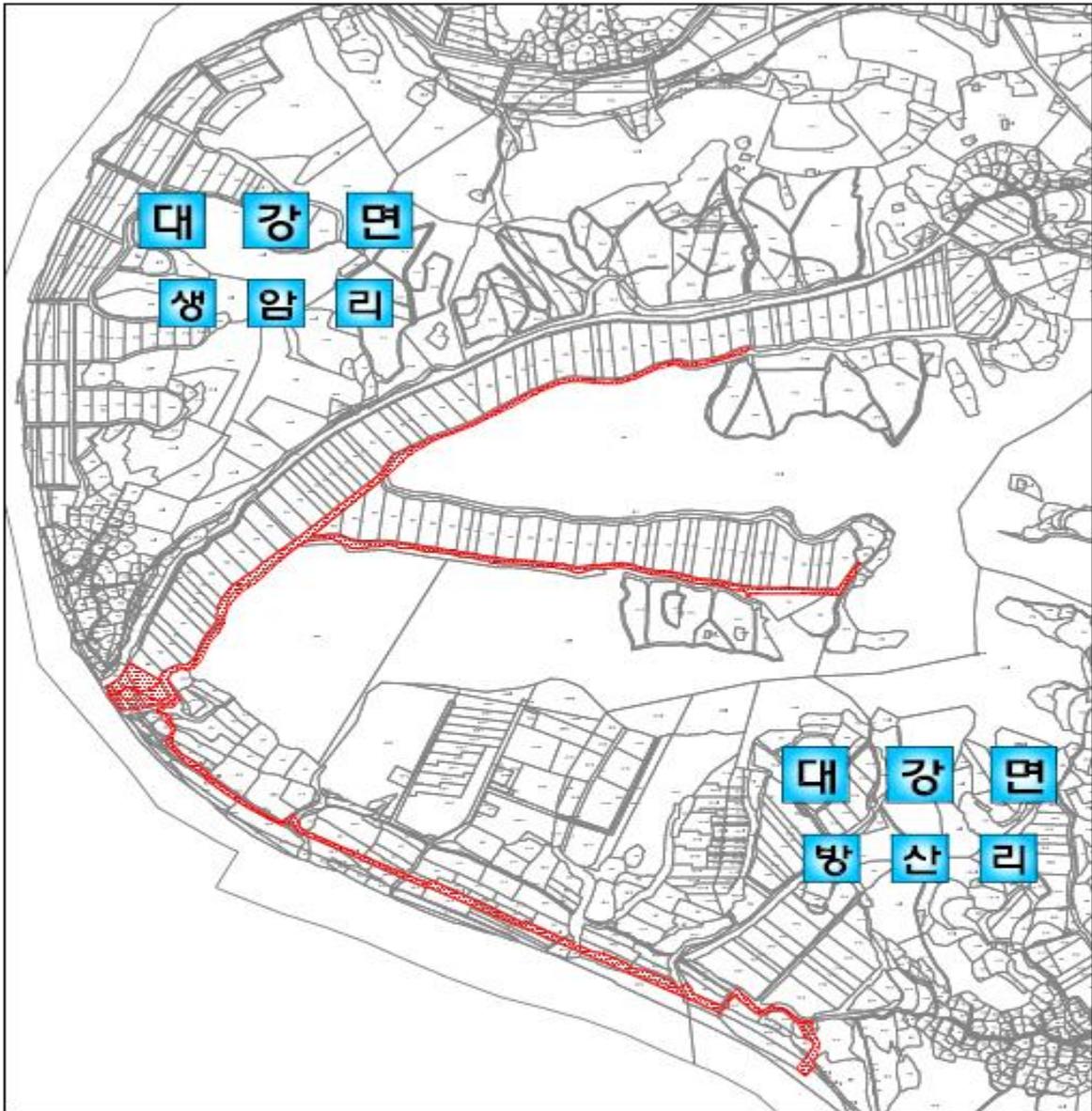
	법 레
	자연재해위험지구
	지적선

S=1:3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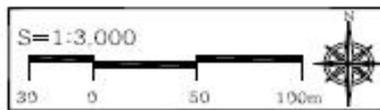
지정권자 : 전라북도 남원시장  
 지정일자 : -  
 고시년도 : -  
 고시번호 : -  
 작성년월일 : -  
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남원시장

#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

S=1:3,000



- 별 레 □
- 자연재해위험지구
- 지적선



지정권자 : 전라북도 남원시장  
 지정일자 : -  
 고시년도 : -  
 고시번호 : -  
 작성년월일 : -  
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: 남원시장

남원시 공고 제2022 - 2254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,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2. 11. 18. ~ 2022. 12. 05. (15일간)
2. 공고장소 :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,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시송달 내용

처분의 제목	소유자 현황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	성 명	주 소		위 치	건축물현황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(말소일 : 2022.11.18.)	오○익	남원시 산동면 태평리 960	건축물 부존재	남원시 산동면 태평리 959	주1 목조 주택 29.6㎡ 부1 목조 주택 23.9㎡

## 4. 기타사항

가.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(☎063-620-659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11. 18.

남 원 시 장

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남원시장

귀하

### 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고 제2022 -2260호

##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「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1일

## 남 원 시 장

### 1. 제정이유

남원시립농악단 상임단원의 위촉 연령 반영과 근무시간 조정 및 보수체계 개선으로 농악단원의 안정적인 생활 및 단원의 처우를 개선하고, 상임 전문단원의 보강으로 남원농악의 계승발전 및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시립농악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《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》

가. 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(안 제6조)

-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 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단장 추천, 시장이 위촉  
※ 부단장의 경우 시장이 필요한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
- 상임전문단원 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단장이 위촉

## 《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(안) 》

가. 단원의 근무시간 및 연습 및 공연 시간 조정 (안 제7조제1항, 안 제2항)

1)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, 상임 전문단원 근무시간

(당초) 주 4일, 주 15시간 미만 → (변경) 주 5일, 주 40시간

2) 비상임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의 연습 및 공연 시간조정

(당초) 비상임 전문단원과 일반단원 연습 : 주 1회 이상 실시

(변경) 비상임 전문단원 : 주 2회 이상, 일반단원 : 주 1회 이상 실시

나. 단원의 의무 개정(안 제8조)

- 위반 시 단장은 남원시립국악단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

다. 농악단 단원 정원 조정 (안 별표 1)

1) 상임 전문단원 6명 → 8명(증 2)

2) 일반단원 36명 → 34명(감 2)

라. 단원의 직책수당 신설 및 직책별 실비보상금 조정 (안 별표 2, 안 별표 3)

1)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 직책수당 신설 : 130,000원 ~ 150,000원

2) 월액 실비보상금 조정

→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, 상임 전문단원 : 공무원 호봉제 보수 상당 적용

→ 비상임전문단원 : 600,000원 → 800,000원으로 200,000원 인상

일반단원 : 180,000원 → 250,000원으로 70,000원 인상

3) 회당 공연수당(출연보상금) 10,000원 ~ 20,000원 인상 (부단장 10,000원 감)

마. 조례 제12조에 따른 출연료 징수 조항 신설(안 제11조) (안 별표 4)

**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21. ~ 2022. 12. 11.(20일간)**

**4. 의견제출**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문화예술과장) 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

- (1) 우편번호 : 55738
- (2) 주 소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문화예술과

라. 의견 제출 방법

- 서면, 팩스(063-625-5747), 이메일(oea0212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**5. 기 타**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(☎063-620-57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2. 11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

### 1. 개정이유

남원시립농악단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상임단원의 위촉 연령을 반영하여 젊은 인재 양성으로 남원농악의 계승발전 및 시립농악단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(안 제6조)

-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단장 추천  
시장이 위촉

※ <신 설> 부단장의 경우 시장이 필요한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

- 상임전문단원: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 
단장이 위촉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2. 11. 21. ~ 2022. 12. 11.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해당”을 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단장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6조제3항 중 “공개모집”을 “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개모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위촉) ① (생략)</p> <p>② 부단장 및 단무장, 사무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③ 상임 전문단원은 <u>공개모집</u>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· ⑤ (생략)</p>	<p>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해당 -----</u> ----- . <u>다만, 부단장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 <u>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공개모집 -----</u>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붙임 관련 법규

###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1. 5. 4.] [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60호, 2021. 5. 4., 일부개정]

전라북도 남원시(국악진흥담당), 063-620-6166

**제1조(목적)**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립농악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.

1. “상임 전문단원”은 상시 근무하는 남원시립농악단원(이하 “농악단원”이라 한다)으로 연습 및 공연을 출연하며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농악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비상임 전문단원”은 비상시 근무하는 농악단원으로 연습 및 공연에 출연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농악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일반단원”은 주 1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농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업무)** 농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통농악의 육성 계승 및 보존
2. 농악 진흥과 보급을 위한 수시 공연
3. 정기발표회 및 시민강좌
4. 남원 합파우 소리체험관 체험, 공연 참가
5. 그 밖에 농악 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

**제4조(위치)** 남원시립농악단은 남원시 술미안길 14-19(노암동)일원에 둔다.

**제5조(단원의 구성)** 농악단은 단장,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 각 1명과 전문단원(상임, 비상임 전문단원을 포함 한다), 일반단원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**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위촉)** ①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.

② 부단장 및 단무장, 사무장은 해당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상임 전문단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 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.

④ 비상임 전문단원은 각 대학 농악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나 졸업생,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,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 중에서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

이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한다.<개정 2021.5.4.>

⑤ 일반단원은 농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.

**제7조(직무 등)** ① 단장은 농악단을 총괄하며,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농악단 운용 및 공연관련 전반사항을 책임 운영한다. 단, 중요시책 및 농악단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단무장은 농악단의 상임전문단원의 업무를 겸하며 훈련과 공연기획을 총괄한다.

④ 사무장은 농악단의 상임전문단원의 업무를 겸하며 공연기획 및 일반사무를 맡는다.

⑤ 단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악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위촉기간 및 해촉)** ① 단장을 제외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악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3. 농악단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될 경우
4. 지정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

**제9조(운영)** ① 단장은 다음 해 세입·세출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8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해당연도 세입·세출결산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.

③ 그 밖에 시책 전반적인 중요한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포상)** 시장은 농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재정)** 시장은 농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출연료 징수)** ① 농악단의 공연 시에는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출연료는 따로 정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출연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남원시립농악단의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, 단원은 이 조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2. 11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

## 1. 개정이유

남원시립농악단원의 보수체계 개선 및 근로시간 조정으로 농악단원의 안정적인 생활 및 단원의 처우를 개선하고, 상임 전문단원의 보강으로 남원농악의 명맥 보전 및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시립농악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단원의 근무시간 및 연습 및 공연 시간 조정 (안 제7조제1항, 안 제2항)

1)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, 상임 전문단원 근무시간

(당초) 주 4일, 주 15시간 미만 → (변경) 주 5일, 주 40시간

2) 비상임 전문단원과 일반단원의 연습 및 공연 시간조정

(당초) 비상임 전문단원과 일반단원 연습: 주 1회 이상 실시

(변경) 비상임 전문단원: 주 2회 이상, 일반단원: 주 1회 이상 실시

나. 단원의 의무 개정(안 제8조)

- 위반 시 단장은 남원시립국악단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

다. 농악단 단원 정원 조정 (안 별표 1)

1) 상임 전문단원 6명 → 8명(증 2)

2) 일반단원 36명 → 34명(감 2)

라. 단원의 직책수당 신설 및 직책별 실비보상금 조정 (안 별표 2, 안 별표 3)

- 1)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 직책수당 신설 : 130,000원 ~ 150,000원
  - 2) 월액 실비보상금 조정
    - 부단장, 단무장, 사무장, 상임 전문단원 : 공무원 호봉제 보수 상당 적용
    - 비상임 전문단원 : 600,000원 → 800,000원으로 200,000원 인상
    - 일반단원 : 180,000원 → 250,000원으로 70,000원 인상
  - 3) 회당 공연수당(출연보상금) 10,000원 ~ 20,000원 인상 (부단장 10,000원 감)
- 마. 조례 제12조에 따른 출연료 징수 조항 신설(안 제11조) (안 별표 4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기 간: 2022. 11. 21. ~ 2022. 12. 11.(20일간)
  - 결 과:
- 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- 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사항 없음

남원시 규칙 제 호

##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단무장”을 “부단장, 단무장”, “주 4일, 주 15시간 미만”을 “주 5일, 주 40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문단원과”를 “전문단원의 연습 및 공연은 주 2회 이상 실시하고,”로 한다.

제8조(단원의 의무)조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.

위반 시 단장은 남원시립국악단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출연료 징수)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출연료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
2.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,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1]

농악단 단위 직책 및 정원

직 책		정 원	비 고
합 계		50	
단 장		1	
부 단 장		1	
단 무 장		1	
사 무 장		1	
전문단원	상 임	8	
	비상임	4	
일반단원		34	

[별표 2]

실비보상금 지급표

(단위 : 원)

직 책		직책수당 (월액)	실비보상금 (월액)	공연수당 (1회)	비고
부단장		150,000	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	50,000	
단무장		140,000	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	50,000	
사무장		130,000	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	50,000	
전문 단원	상 임	-	공무직 호봉제 봉급 상당액	50,000	
	비상임	-	800,000	50,000	
일반단원		-	250,000	50,000	

1.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에 준하여 실비보상금, 가족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.  
단, 비상임단원과 일반단원은 근로시간을 고려해 실비보상금 정액 지급한다.
2. 단무장, 사무장,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, 유사경력을 합산한다.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   년    월   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전 화 :</p> <p><b>남원시장 귀하</b>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**남원시 공고 제2022 -2283호**

『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3일

**남 원 시 장****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****1. 제정이유**

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 보장 등의 문제를 개선하며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목적,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책무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,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~ 제6조)
- 다. 무상교통에 따른 손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**3. 입법예고기간** : 2022. 11. 23. ~ 2022. 12. 13. (20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,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 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

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교통과

##### 다. 의견 제출 방법

서면, 이메일(jwjin87@korea.kr), fax(063-620-6718) 및 직접방문 등

#### 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 교통행정담당(☎063-620-656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6. 붙임** :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2. 12. .  
 제출자: 남원시장  
 제안설명자: 교통과장

### 1. 제정이유

시내버스를 이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규정 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지원 계획, 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, 지원 체계 구축사항 규정 (안 제3조~안 제5조)
- 다. 이용방법, 손실금 지원 규정 (안 제6조~안 제7조)
- 라. 지원중단 및 환수, 사후관리 규정 (안 제8조~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간: 2022. 11. ~ 2022. 12. (20일간)
    - 결과:
  - 2) 비용추계서: 첨부
  - 3) 규제예비심사: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어르신”이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2. “시내버스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
3. “무상교통”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상교통카드로 이용하고,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(이하 “운송사업자”라 한다)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시 관할 시내버스는 시와 환승 연계되어 있는 시 인근 지역의 시내버스를 포함한다.
4. “무상교통카드”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·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(이하 “교통카드정산사업자”라 한다)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.

제3조(무상교통 지원 계획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
2. 무상교통카드에 관한 사항
3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) 무상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체계 구축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·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,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방법) ①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급받은 무상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.

② 시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8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무상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손실금 지원)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인 무상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무상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중단 및 환수)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
2.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
3.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
4. 그 밖에 무상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사후관리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

3.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붙임

## 관련 법령

## ■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 ~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(생략)

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 ~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(생략)

## 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 ~ 7. 국제교류 및 협력(생략)

## ■ 노인복지법

제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■ 은행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8. 13., 2015. 7. 24., 2021. 4. 20.>

2. “은행”이란 은행업을 규칙적·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.

## 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제3조(이동권)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## 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 6. 9.>

1.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·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
2.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
3.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

4.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
  5.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
  6. 오지·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
  7.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  8.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,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8(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·관리 및 제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(이하 “대중교통운영자등”이라 한다)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,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(이하 “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선(路線)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(이하 “노선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  2. 구역(區域)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  3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·운행시간·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    - 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
    - 나.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
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.

## 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
### 1.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

가. 시내버스운송사업: 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.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·직행좌석형·좌석형

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.

나. 농어촌버스운송사업: (내용생략)

다. 마을버스운송사업: (내용생략)

라. 시외버스운송사업: (내용생략)

2.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

가. 전세버스운송사업: (내용생략)

나.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: (내용생략)

다. 일반택시운송사업: (내용생략)

라. 개인택시운송사업: (내용생략)

## 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제7조(자동차의 종류)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### 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6. 8.>

####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(제7조 관련)

구 분	자 동 차 의 종 류
1.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	<p>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(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).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p>가. 시내좌석버스: 제8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,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</p> <p>나. 시내일반버스: 제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</p>
2. 시외버스운송사업	<p>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.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p>가. 시외우등고속버스: 제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</p> <p>나. 시외고속버스: 제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</p> <p>다. 시외고급고속버스: 제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</p> <p>라. 시외우등직행버스: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</p> <p>마. 시외직행버스: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</p> <p>바. 시외고급직행버스: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</p>

	<p>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</p> <p>사. 시외우등일반버스: 제8조제7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</p> <p>아. 시외일반버스: 제8조제7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</p>
3. 택시운송사업	<p>승용자동차 또는 각 목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, 다만,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</p> <p>가. 배기량이 2,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</p> <p>나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</p>
4. 마을버스운송사업	중형승합자동차. 다만,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.
5. 전세버스운송사업	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(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)
6.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	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.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.
7.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	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

## 비고

1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, 제2호,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(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를 사용할 수 있다.
2.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# 남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#### ○ 재정수반요인

- 제5조(지원체계 구축)
- 제7조(손실금 지원)

#### ○ 관련조문

제5조(지원체계 구축)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,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손실금 지원)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의 무상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# ○ 비용추계의 전제

- 시스템 구축비용 : 100,000천원
- 교통카드 발급 : 17,363장 × 2,200원
  - ※ 2022년 70세 이상 인구 17,363명(최근 5년간 70세 인구 증가율 2%)
  - ※ 2024년~2027년 산출근거 : 700장 × 2,200원 (신규발급건)
- 손실금 지원 : 1,000원 × 886,000건
  - ※ 2022년 70세 이상 시내버스 탑승건수 약 886,000건
  - ※ 2024년~2027년 산출근거 : 2022년 대비 매년 2% 증가

#### ○ 연도별 예산추계 : 1,024,199천원 (2023년도 예산)

(단위:천원)

구분	합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비고
계	4,754,977	1,024,199	905,220	923,294	941,730	960,534	
시스템 구축 (1식)	100,000	100,000	-	-	-	-	
교통카드 발급	44,199	38,199	1,500	1,500	1,500	1,500	
손실금 지원	4,610,778	886,000	903,720	921,794	940,230	959,034	

### 3. 재원 조달 방안

- 재원조달계획 : 전액 시비 편성

### 4. 그 밖의 사항

- 작 성 자 : 교통과장 김윤자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전 화 :</p> <p><b>남원시장 귀하</b>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◎ 남원시 공고 제 2022 - 2284호

## 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3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22-4 2	남원시 쌍교동 58-6(대), 58-4(잡), 58-5(대), 58-9(대), 58-13(전), 58-16(전), 58-18(전)	주식회사 윤***	2022-건축과- 신축허가-28	26.6 9.8	3.0 2.0	24	58-4	13	주식회사 윤홀딩스
							58-5	6	주식회사 윤홀딩스
							58-13	5	주식회사 윤홀딩스

◎ 남원시 공고 제 2022 - 2285호

## 도로지정공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23일

## 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 번호	대 지 위 치	건축주 성 명	허가(협의) 및 신고번호	도로 길이 (m)	도로 너비 (m)	도로 면적 (㎡)	이해관계인		
							지 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
2022- 44	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1-2번지	김*식	2022-건축과- 신축신고-271	1,715	3	4,744	동천리 141-5	219	남원시
							141-25	261	김*자 외4인
							141-11	15	한국농어촌공사
							141-20	111	남원시
							141-21	53	남원시
							141-40	27	남원시
							산덕리 335-12	19	남원시
							335-7	16	한국농어촌공사
							335-24	18	남원시
							335-8	566	오*경
							270-15	55	남원시
							270-17	1,609	전*례
							270-48	219	김*길
							270-60	163	신*숙
							1-2	372	김*식
							용산리 산64-5	8	김*자 외4인
							산63-1	498	이*세
65-30	64	남원시							
65-4	156	남원시							
65-28	295	박*영							